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087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신○○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득세 32,947,380원, 지방교육세 2,412,600원, 농어촌특별세 1,605,720원, 가산세 포함 합계 36,965,7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B단체에서 포교사업, 구료 및 자선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30. ○○시 C 학교용지 7,390㎡, D 학교용지 172㎡, E 학교용지 793㎡, F 도로 18㎡, G 도로 4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단법인 H로부터 증여받고, 2017.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I시설(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판단하여 2022. 5.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32,947,380원, 농어촌특별세 1,605,720원, 지방교육세 2,412,600원 합계 36,965,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0. 1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J종교단체 포교활동 및 선교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I을 운영하였고, 실비 충당 목적으로 이 사건 I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관료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I을 운영한 것은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추징사유의 하나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873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호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 1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I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I을 원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I 1층은 사무실, 소강의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객실, 식당, 강당으로, 2층은 그룹방, 객실로 각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I 일반건축대장에는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I은 일반적으로 J종교단체 활동의 중심인



예배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수련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참가비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I을 교육장소 및 숙소로 제공하면서 대관료를 받았고, 원고 소속 B 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관료를 지불하면 언제든지 이 사건 I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I의 이용대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I 운영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소를 대관하는 사업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유아 대관료

0세~4세 : 무료

5세~미취학 아동 : 50%

초등학생이상 : 100%

2. 대관료(캠프 및 일일체험)

구 분	당 일		1박2일		2박3일	
개인부담	2만원(1식 포함)		5만원		10만원	
			※ 후원회원 10%할인 (단체시 해당없음) ※ 식대: 1식 7천원(추가시)			
강당사용료	30명 초과	20만원	30명 초과	30만원	30명 초과	50만원
	30명 이하	10만원	30명 이하	20만원	30명 이하	30만원
소강의실	4만원		7만원		10만원	

3. 체험료

사전 상의후 조정. 체험을 지도할 강사분들이 외부강사이시기 때문에 사전 상의가 필요함.

다) 이 사건 I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의 수입은 334,762,620원인데, 이 중 신자를 대상으로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46,939,050원으로 총 수입의 약 14%를 차지하는 반면, 여름·가을·겨울캠프를 위하여 이 사건 I을 대관하면서 얻은 수입은 224,361,000원으로 총 수입의 약 67%를 차지하는바, 이 사건 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이 사건 I을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대관하면서 얻은 수입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시 E 학교용지 793㎡ 지상 건축물을 개인에게



임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8,010,030원을 임대료로 받았다.

마) 원고는 실비 수준으로 대관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비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용자별로 사용기간에 따라 고정된 금액을 받은 점, 강당사용료, 소강의실 사용료를 따로 책정한 점, 이 사건 I을 이용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을 제6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비로 이 사건 I을 대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I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실비로 이 사건 I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데,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I은 처음부터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순수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부차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간혹 영세, 즉 J종교단체에 입문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제3, 4면), 위와 같은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I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장소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백○○

판사 강○○



별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